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을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로, “서류에 포함하여”를 “서류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를 각각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지체없이”로 한다.

제4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별표 6 제1호가목 중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생략)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u>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u>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u> ----- <u>서류를</u> ----- -----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생략)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u>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u>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지체없이</u> ----- ----- ③ ----- ----- ----- ----- -----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u>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u>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생략)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2. 「<u>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에 따른 <u>한국광해관리공단</u> 3. 삭제 4. 「<u>한국광물자원공사법</u>」에 따른 <u>한국광물자원공사</u> 5. 삭제 6.·7. (생략)	----- ----- ----- ----- ----- ----- <u>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지체없이</u> ----- -----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 ----- -----. 1. (현행과 같음) 2. 「<u>한국광해광업공단법</u>」에 따른 <u>한국광해광업공단</u> <삭 제> 6.·7. (현행과 같음)
---	---